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중앙대책본부장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긴급 구조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및 내용을 명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의 작성과 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기본계획의 취합 및 기본계획안 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 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과 관련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및 긴급구조 교육 담당기관 지정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함(안 제53조 및 제55조).

-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중운집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안전점검, 안전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중운집으로 인해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의 중단이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12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사업화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도록 일원화함 (안 제73조 및 제78조).

II. 검토의견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 인과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각종 조치 규정 및 벌칙 규정 정비 필요 (안 제66조의12 및 제78조의3)
- 안 제66조의1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현행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과 안전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의 주최자나 관계자에게 행사의 중단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해당 규정의 경우 법률 체계상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마련함.

먼저, 안 제66조의12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현행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8조의3은 제66조의12제3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66조의12제3항에서 현행법 제30조와 제31조의 조치를 혼용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뿐만 아니라 현행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도 처벌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양 조치(긴급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의 근거를 조항을 분리하여 규정 하였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긴급안전점검과 안전조치명령의 절차나 방법 등은 현행법 제30조와 제31조를 따르도록 하는 개정

안의 취지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안 제66조의12제5항에 준용 규정을 추가하였음.

- 다음으로, 안 제66조의12제3항 후단은 현행법 제31조에 따른 안전 조치명령을 행사의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사의 주최자 또는 관계자는 현행법 제31조에 따른 점유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사의 주최자나 관계자’의 지위가 현실적으로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사의 주최자나 관계자’를 다중인과 행사 관련 시설·장소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중 ‘점유자’로 일률적으로 간주하여 안전조치명령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보다는 이를 안전조치 명령의 대상에 그대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으며,

‘행사의 관계자’는 안 제78조의3의 벌칙과 관련하여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관계자에게도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대상은 ‘행사의 주최자’로 한정하였음.

더불어, 안 제66조의12제4항(수정의견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 역시 안전조치명령 대상 과 마찬가지로 ‘행사의 주최자 및 관계자’에서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행사의 주최자’로 수정하였음.

- 마지막으로, 안 제66조의12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중운집 시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중운집 시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측면이 있고,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나 긴급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행사 중단 권고나 협조 요청을 할 때의 절차나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이에 맞게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였음.

<안 제66조의12 및 제78조의3에 대한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신 설>	제66조의12(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중운집의 일시 및 장소 2.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3. 공간의 수용 능력 4.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 시간 5. 그 밖에 다중운집인파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제66조의12(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중운집의 일시 및 장소 2.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3. 공간의 수용 능력 4.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 시간 5. 그 밖에 다중운집인파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실시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나 제66조의11제6항에 따른 지역 안전협의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행사의 주최자 또는 관계자를 제31조에 따른 점유자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사의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실시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나 제66조의11제6항에 따른 지역 안전협의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시설·장소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다중운집행사의 주최자에게 제31조제1항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과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에 관하여는 제30조와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시설·장소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행사의 주최자에게 그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중운집 시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 및 제6항에 따른 권고와 협조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3(벌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의3(벌칙)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의1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의3(벌칙)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의12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조치 관련 조문의 시행일 연기

- 안 부칙 제1조의 단서는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조치와 관련한 제66조의12의 개정규정을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하위법령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다른 조문과 마찬가지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마련함.

<안 부칙 제1조(시행일)에 대한 수정의견>

개정안	수정의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

개 정 안	수 정 의 견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6조제5항, 제52조제11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6조의12부터 제66조의15까지, 제7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8일에 시행한다.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6조제5항, 제52조제11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기타 사항

-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개정문 작성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자구를 추가 명시하는 등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 성 완)